

“ 對고객환율 자유화 및 외환시장 활성화방안 ”

—재무부—

I. 배경

-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폭넓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와 개도국 외채위기 등을 배경으로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고,
 - 선진제국을 중심으로한 금융의 국제화 진전과 전자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금융시장이 범세계적으로 통합화(Globalization)되어 가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한 금리의 자유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완화 등 금융자유화(Deregulation)가 진전되고 있고,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조달·운용형태가 예금·대출로부터 증권발행·매매로 전환되어 가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이와같은 국제금융 환경하에서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우리경제와 국제경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환율제도의 발전적 개편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지난 9.1 「환율제도의 개편」에 관한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단계로 금년중에는 현행제도하에서 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이기 위한 은행의 대고객환율 자유화등 보완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II. 환율의 가격기능재고를 위한 대고객환율 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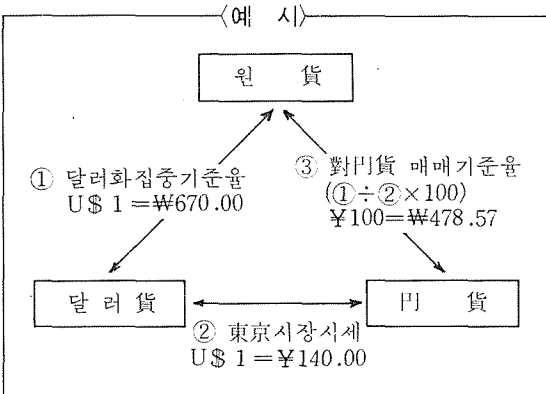
1. 현행제도의 내용

- 환율은 크게 (1) 집중기준을 (2) 대고객환율 (3) 은행간환율로 나누어지게 됨
- (1) 먼저, 모든 환율의 기준이 되는 집중기준율은 전일자 국제통화 시세를 토대로 하여 IMF가 매일 결정하여 발표하는 SDR 시세와, 우리나라의 대외교역비중을 감안하여 구성한 『독자바스켓』의 시세를 종합하여 이를 기초로 한국은행에서 매일아침 미달러화에 대한 집중기준율을 결

정·고시하고 있음.

- (2) 각 외국환은행에서 고객과 거래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고객환율은 집중기준율에 일정률(%)로 고정된 매매율차(Spread)를 가감하여 산출하고 이를 당일중의 모든 미달러화 대고객거래에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円貨, 마르크貨등 집중기준율이 매일 고시되지 않는 기타통화에 대하여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와 기타통화간의 환율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화와 대미환율을 기타통화의 대미환율(국제시세)로 나누어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률(%)로 고정된 매매율차(spread)를 가감하여 대고객환율을 결정하게 됨



* 대고객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매매율차(spread)는 고객과의 거래대상이 전신환인지 또는 현찰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바,

- ① 당일자에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므로 금리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신환(T/T)의 경우에는 0.4%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 ② 현찰의 경우에는 현송비용 및 자금부담 등을 감안 1.5%를 가감하도록 되어 있음.
- (3) 은행간 환율은 외국환은행간에 외환을 매매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로서 은행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전히 자유화 되어 있음.

• 한편,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외환거래 결과에 따라 외환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1차적으로는 외국환은

행간에 과부족을 매매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간 외환거래를 통해서도 조정되지 못한 나머지 초과 또는 부족분은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집중매매율이라고 하는바, 집중매매율은 집중기준율에 일정률(현재 0.35%)로 고정된 매매율차를 가감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2. 개선조치의 내용

- 은행의 대고객 환율자유화
 - (1) 현재 집중기준율에 무조건 0.4%를 가감하여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 미달러화의 경우에는 집중기준율에 0.4%이내의 매매율차를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円貨, 마르크화 등 기타 통화의 경우에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시세변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보다 신속성 있는 환율결정이 가능하도록 매매율차를 0.8%이내에서 외국환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선
전신환매도율	기준율+0.4%(고정)	기준율+0.4%이내에서 자율결정(기타통화는 +0.8%이내)
전신환매입율	기준율-0.4%(고정)	기준율-0.4%이내에서 자율결정(기타통화는 -0.8%이내)

- (2) 현재 집중기준율에 무조건 1.5%를 가감하여 모든 외화현찰거래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고객 현찰매매율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 對고객 현찰매매는 고객이 주로 여행자(외국인, 내국인)이고 최근 크레디트 카드이용 확대등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은행이 현찰조달 비용을 기초로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거래환율(집중매매율) 신속적 운용

- 현재는 집중기준율에 무조건 0.35%를 가감하여 한국은행과 외국은행간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 앞으로는 당일 은행간 거래환율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할 경우에는 은행간 거래환율중 최저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은행이 매도할 경우에는 은행간거래 환율중 최고환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다만, 전신환매매율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전신환매매율을 기준으로 함)

현 행	개 선
기준율의±0.35%(고정)	은행간 거래환율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용

3. 개선조치에 따른 기대효과

(1) 개선후의 모습

- 현재까지는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은행별, 거래상대방별, 거래규모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게 됨.
- 對고객 현찰매매율도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게되고, 거래통화별로 다른 매매율차(%)가 적용될 수 있게 됨.
-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거래환율 역시 매매율차(%)가 매일 달라질 수 있게 됨.

(2) 개선조치의 효과

- 대고객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시장평균 환율(궁극적으로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됨.
- 은행간 경쟁을 통하여 매매율차(%)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특히 수출기업)의 경우는 외환의 매매에 따른 부담(비용)이 줄어들게 되나, 은행의 경우는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이 시장개입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은행간의 외환거래가 활성화 되고 한국은행의 개입규모가 축소되어 한국은행의 수지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1. 외국환은행의 환포지션 관리 선진화

〈기본방향〉

외국환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에 대한 환포지션 관리를 선진화해 나가야 함.

(1) 현행제도

-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의 일환으로 외국환의 매매를 하게 되므로 그 결과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환 은행의 『환포지션』이라고 하며, 이는 은행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나타나게 됨

- 환포지션
 - 외국환매입초과(Over-Bought) : 외국환 매입이 매도보다 큰 경우
 - 외국환매각초과(Over-Sold) : 외국환 매도가 매입보다 큰 경우

- 그런데 과도한 환포지션의 보유는 은행에게 환율변동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즉 '환위험'을 부담시켜 건전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환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외국환 매입초과액 한도를 전월의 매입외환 평잔의 2배범위내에서 은행별로 구분 적용하고,(은행에 따라 20~150%)
- 외국환 매각초과액 한도를 선물환에 한하여 5백만달러 이내에서 인정하여
- 매순기(10일)별로 은행의 환포지션을 관리하고 있음.

* 외환거래가 상당히 자유로운 선진국에서도 환투기억제등을 통한 은행경영의 건전화라는 측면에서 환포지션을 관리하고 있음.

(2) 금년중 추진사항

가. 환포지션 관리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환 매입초과액 한도(상한)를 은행별 구분없이 전월의 매입외환 평잔의 2배로 확대함.

나. 외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토록 외환거래 자금의 확보를 유도키 위해 외국환 매입초과액의 하한

Ⅲ. 외환시장 수급확충 대책

을 전월의 매입외환 평잔의 2%로 설정하고 포지션 관리방식을 일별포지션 기준으로 변경.

〈6월중 매입외환 평잔규모〉

(단위 : 백만달러)

	총 규모	은행 수	1사평균
KBB 및 시중은행	3,581	8	448
지방은행	264	10	26
특수은행	227	9	25
외은지점	952	60	16
증권회사	37	6	6
합	5,061	93	54

2. 선물환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기본방향〉

개인 및 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1) 현행제도

- 선물환거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 일정한 환율로 외국환을 매매하겠다고 예약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무역거래시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 그러나, 선물환거래가 이와같이 실수요에 기초를 둔 외국환의 매매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의 예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거래로도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 선물환 거래시 매 건별로 사전에 실수요가 여부를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금년중 추진사항

- 기업의 대외거래규모의 확대 및 환율제도 개편에 따라 환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환거래의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이므로
- 현재 건당 수출입 규모가 대부분 10~20만달러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선물환거래시 건당 50만달러이하는 실수증빙을 사후에 제출토록 함으로

써 대외거래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참고〉 은행 對 고객의 외환거래규모 추이

(단위 : 억달러)

	1985	1986	1987	1988
현 물 환 ¹⁾	711	836	1,105	1,325
선 물 환 ²⁾	151	193	247	336
경상거래규모 ³⁾	677	818	1,039	1,315

註 : 1) 계약체결일에 결제되는 통상의 외환거래
 2) 원화선물환
 3) 수출입 + 무역외수입 · 지급

IV. 외환시장의 조직체계 (Infrastructure) 정비

1. 외환거래 중개기능의 대폭 확충

〈기본방향〉

국내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확대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외환거래 중개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센터 설립 ⇒ 전문브로커회사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1) 현행제도

- 국제 외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전문 직업적 외환중개인제도가 국내에는 아직 없음.

〈외환시장 참가자 국제비교(1988년 기준)〉

	韓國	東京	홍콩	싱가포르	뉴욕
외국환은행	94 ¹⁾	288	409	229	123 ²⁾
브로커회사	—	8	10	8	9

註 : 1) 1989년 7월 기준
 2) 1986년 기준

- 다만, 금융결제 관리원의 외환거래실에서 은행간 원화대 美달러화 거래를 중개하고 있음.
 - '88년중 은행간 원화대 미달러화 거래(257억달러)의 94%(241억달러)를 중개함.

〈거래실적〉

(단위 : 백만달러)

	1985	1986	1987	1988
거래금액	6,403	9,217	13,139	24,071
(일평균)	(26.0)	(37.6)	(53.6)	(97.1)

(2) 금년중 추진사항

- 현재 금융결제관리원 소속 외환거래실의 기능을 확충 중에 있음.
 - 외환거래실과 참가은행간에 터미널 설치
 - 인원, 장비의 보강 및 외환거래실 내부업무의 전산화
- 대고객 매매율 자율화로 인한 은행간 외환거래의 대폭증대에 대비하여 외환거래실을 독립법인인 외환거래센터로 개편 추진을 준비.

2. 외환부문의 전산화 추진

(1) 필요성

- 외환시장 활성화,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거래의 사후관리 및 신속·정확한 국제수지 통계관리를 위하여 외환부문의 전산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 특히, 앞으로 외환관리체계를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전산화를 통한 외환거래 사후관리의 효율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
 - 외환거래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환포지션 관리, 거래확인, 결제처리등 외환거래업무의 전산화 필요 ⇒ 외환시장 육성의 기초
 - 개인당 또는 기업별 외화영수 및 대외송금 규모, 세부거래 항목별 대외지급규모 확인등을 위해 통계관리의 전산화 필요 ⇒ 외환거래 사후관리의 기초

(2) 금년중 추진사항

- 외환부문 전산화 추진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

3. 외환시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필요성

- 자유외환시장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참가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체인 『외환시장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함
- * 동경 외환시장 관행위원회(일본), Foreign Exchange Committee(미국) 등

(2) 금년중 추진사항

- 외환시장 운영위원회의 발족
- 구성 : 외국환평형기금,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환거래실 등의 실무책임자 등
- 주요기능
 - 시장의 기술적인 문제협의 및 거래의 표준화(용어, 거래절차 및 방법)
 - 시장참가자 상호간 및 정책당국과의 정보 및 대화통로
 - 외환시장 발전 및 국제화 추진
 - 시장참가자 상호간의 분쟁조정 등

V. 추진 일정

- 대고객환율 자율화 : 9. 20 시행
- 포지션 관리등 외환시장 수급확충 대책 : 9. 20 시행
- 외환시장의 조직체계 정비 : 금년중 시행
 - 관계기관 협의 및 지도등 사전준비 필요
 - 외환거래센터 설립 준비
 - 외환시장 운영위원회 구성
 - 외환거래 전산화추진 실무전담반 구성 등

신고하는 주인의식 선진조국 초석된다